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 채택방안에 관한 연구

허학영* · 김현* · 이영주** · 김성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주)그린리서치,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이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10만 개소 이상의 다양한 보호지역(protected areas)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대략 2천만km²에 이른다(Chape *et al.*, 2005). 이러한 보호지역은 관련 법제와 관리 목적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140여개가 넘는 매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IUCN, 1994),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The World Conservation Union)에서는 보호지역에 대한 다양한 용어상의 차이점을 해소하고, 세계 도처에 지정된 많은 종류의 보호지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관리 목적에 근거하여 보호지역 카테고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호지역 분류의 국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은 보호지역의 다양한 명칭으로 인한 용어(terminology) 혼란 감소, 엄격한 보존에서 지속가능한 이용 까지의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보호지역 유형의 정리, 통합적인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 시스템 구축, 원활한 국제적 이해와 비교 및 국제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지역 관련 법제화의 기초 제공, 보호지역 내 적합한 활동과 관리를 제공, 관리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Criteria), 보호지역 관련 법·제도·정책·국제협약의 근거(정보) 제공, 생물지리적 계획의 도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Bishop *et al.*, 2004),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총회(CBD COP7, 2004)에서 IUCN 카테고리를 보호지역 분류의 국제적 기준으로 공식 채

택하였으며, 회원국에게 보호지역의 국제적 분류체계(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인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Locke, 2005)하는 등 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제적 분류체계의 도입은 이미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세계보호지역위원회와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WCMC)가 공동 협력하여 IUCN 기준에 따라 유엔 보호지역 목록(United Nations List of Protected Areas)을 작성하여 공식발표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환경지속성지수(ESI)¹⁾ 평가나 OECD 환경성과평가 등에서 자연환경 분야의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국제적 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호지역 카테고리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전문가, 정부, 국회, NGO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호지역 현황 분석과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의 특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의 효과적 채택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II. 우리나라 보호지역 현황

1. 보호지역의 개념

보호지역에 대한 개념은 지역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보호지역의 개념을 살펴보면 유엔환경계획(UNEP, 2003)에서는 보호지역을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기능이 유지·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나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관리되는 육지, 담수, 해수나 또는 하구의 일정 지

역'으로 정의하였으며, 생물다양성협약(CBD, 2004)에서는 보호지역을 '특별한 보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지정, 통제,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보호지역의 개념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정의로서 '생물다양성, 자연·문화자원의 보호와 유지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지역으로 법을 통한 관리나 기타 효과적인 수단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IUCN, 1994).

우리나라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다수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 또는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경관(Landscape) 보전의 개념을 담고 있는데, 이는 경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문화 자원과 그 심미적·생태적 특성의 보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한국의 보호지역 지정 특성과 국제적인 보호지역 개념을 모두 고려하여 보호지역을 재정의 해 보면 "생물 다양성, 생태계, 자연·문화자원, 경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법적 또는 기타 효율적인 수단으로 지정·관리되는 지역"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2. 보호지역 지정 현황

국내에 지정된 보호지역을 지정 목적과 지정 기준을 근거로 그 유형을 분류해 보면 표 1과 같이 세 종류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전술하였던 보호지역의 정의에 비추어 좁은 의미의 보호지역은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의미의 확대에 따라 보호지역의 범주가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여러 법률 체계를 바탕으로 환경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문화재청 등 다양한 관련 부서에 의해서 중복 지정, 관리되고 있으

며, 우리나라 주요 보호지역의 지정 현황을 관계 법령, 지정(관리)기관 등을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 생태계, 자연·문화자원, 경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법적 또는 기타 효율적인 수단으로 지정·관리되는 지역"이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대략 14개 유형의 1,119개소, 15,621.435km²에 이른다. 하지만 총 면적의 경우 중복 지정된 보호지역을 감안하지 않았고, 육상과 해상보호지역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또한 자료 취합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III. IUCN 카테고리 시스템 고찰

1.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의 변천

IUCN은 1948년 IUPN(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ature)이라는 명칭으로 프랑스의 Fontainebleau 국제회의에서 결성되었으며, 1956년에 IUCN으로 개명하였다. 1990년 "World Conservation Unio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IUCN과 병기하고 있으며 여전히 IUCN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82개 국가회원, 111개 정부기관, 800개 이상의 NGOs와 181개국의 대략 10,000여명 정도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IUCN은 1970년대부터 그 산하 조직인 CNPPA(Commission on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현재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를 통하여 세계 전역의 보호지역의 유형화를 위한 국제적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총 10개의 유형으로 구분된 IUCN의 1978년 분류는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의

표 1. 국내 보호지역 유형(지정목적 및 지정기준 근거)

지정 목적 및 기준	보호지역 명칭
1. 생물다양성, 생태계, 자연·문화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환경보전해역,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등, 순수 동·식물 제외), 명승,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 자원(resource)이용, 오염 방지(복원), 생태계 서비스(공익적 기능)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지하수보전구역, 특별관리해역, 보호수면, 육성수면, 수산자원관리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골재채취금지구역, 보안림, 특별산림보호구역, 산림정화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3. 토지 용도 구분, 토지 이용 목적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 자연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한 보전지역

표 2. 국내 보호지역 지정 현황 및 지정(관리)기관

구분	개소수	면적(km^2)	관계 법령	지정(관리)기관	비고
국립공원 ^a	20	6,580	자연공원법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외: 한라산(제주시), 경주(경주시)
도립공원 ^a	23	784	자연공원법	지방자치단체	
군립공원 ^a	33	441	자연공원법	지방자치단체	
생태·경관보전지역 ^a	30	294.55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해양수산부, 시도지사	환경부 10개소, 해양수산부 4개소, 시도지사 16개소
습지보호지역 ^b	16	247	습지보전법	환경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11개소(106.529), 해양수산부 5개소 (140.728)
특정도서 ^a	153	9.985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환경보전해역 ^c	4	1,882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수산부	특별 관리 해역: 해양환경기준의 유지 곤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a	544	1,392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부, 시도지사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a	1	26.20			
천연기념물 ^d	35	524.7	문화재보호법 ¹⁾	문화재청	
천연보호구역 ^d	10	390			
명승 ^b	15	75.4			
백두대간보호지역 ^e	1	2,63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환경부협의)	7개 국립공원($1,269\text{km}^2$ 포함), 핵심1,699, 완충 935
산림유전자원보호림 ^f	234	340.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특별산림보호구역: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정
				시도지사, 지방산림 관리청장	산림정화보호지역: 오염되었거나 오염 우려 가 있어 오염 방지 및 산림 환경 보전이 필 요한 지역
	1,119	15,621.435			

자료: ^a: 환경부(2006),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b: 문화재청(2006), 문화재청 내부자료, ^c: 산림청(2005), 임업통계연보,

^d: 환경부(2006), 환경부 내부자료, ^e: 육근형 등(2005), ^f: 산림청내부자료(2006, 9월 현재)

*: 비교적 면적이 큰 천연기념물 중 천연보호지역을 제외한 수치.

UN List 작성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우형택, 2002). 이 첫 번째 분류 체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검토와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예를 들면 Category VI, VII, VIII 사이의 차이점이 항상 분명하지 않는 것이 경험상 나타났으며, 이 결과 IUCN은 1994년 6개의 유형의 새로운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는 1978년 시스템이 세계의 각기 다른 지역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규범적(Prescriptive)이라는 평가에 기초하여,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폭 넓음과 이전 시스템보다 유연성이 있는 유형화 시스템으로 용도 지구 구분이나 유형화에 있어 토지 소유권과 관리 기관에

대한 사항이 이전에 비해 훨씬 유연해졌다(IUCN, 1994). 1994년 유형화 시스템이 적용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호지역의 수와 규모에서 급성장하였으며, 2003 World Parks Congress에서 보호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포고하기에 이르렀다(Locke et al., 2005). 보호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특징은 보호지역에 있어 좀 더 사람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소유되고 관리되고 있는 보호지역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폭 넓은 의미로서, 지역 주민들의 빈곤을 저감할 수 있는 혜택 등 인간과 보호지역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고 있다(Phillips, 2003).

2. IUCN 카테고리 시스템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는 그 지정 목적을 근거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6개로 구분하고 있지만 카테고리 I 지역이 2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총 7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N. IUCN 카테고리 시스템 채택 방안

1. IUCN 카테고리 도입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보호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은 보호지역의 관리 목적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한 것으로 이의 적용에 있어 상당한 유연성(flexibility)을 갖는다.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역의 특성 및 관리 현황에 적합하도록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보호지역 관리 목적

IUCN에서는 보호지역의 관리 목적으로 9개를 제시

하고, 카테고리별로 적용 가능성에 대한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 보호지역의 카테고리 분류 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요 관리 목표는 “원생지 보호”, “문화적/전통적 특성 유지”, “자연생태계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등이다. 먼저 원생지 보호의 경우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으로 인해 인간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원생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간섭이 미치지 않은 자연지역의 야생성(자연성)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성상 엄밀한 의미에서 원생지 개념의 보호지역인 카테고리 Ib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연 생태계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의 경우 전 국립공원에서 지역주민의 생업 활동이 되는 임산물 채취 등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강도 여부에 따라 카테고리 분류의 키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IUCN의 지침에 따르면 “문화적 · 전통적 특성 유지”는 카테고리 V에서 1차 목표, 카테고리 VI에서는 2차 목표로 제시되어 있고 다른 카테고리에서는 적용될 수 없음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좁은 지리적 환경 속에서 산악형국립공원내 일부 취락지역과 사찰이 존재

표 3.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유형	카테고리 명칭	관리 목표
I	a 학술적(엄정)보호구역 (Strict Nature Reser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격한 자연 생태계 보호(과학적 연구, 환경 교육 등을 위한 자연 환경의 확보)· 교란 최소화, 대중의 접근 제한
	b 원시야생지역 (Wilderness A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생지(야생지) 보호·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야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이용 허용
II	국립공원 (National P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계 보호와 휴양· 자연 상태/자연과 가까운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적, 문화적, 여가 목적의 방문객 이용 관리
III	자연기념물 (Natural monu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적 특징(feature) 보전(유일성, 자연성, 대표성 등)· 연구, 교육, 해설, 대중의 감상 기회의 제공
IV	종 및 서식지관리지역 (Habitat /Species Management A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 종, 개체군, 군집 또는 환경의 물리적 특성 보호를 위한 서식처 확보 및 유지(관리 활동을 통한 보전)· 대중에게 야생 관리 및 서식처 특성을 감상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제한된 지역의 개발
V	육상(해상)경관보호지역 (Protected Landscape/Seasca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상/해상 경관의 보전과 휴양· 전통적 토지 이용, 건축 양식, 사회문화적 표현의 지속을 통해 자연과 문화의 조화로운 상호 작용을 유지· 지역에 적합한 규모나 유형의 관광, 휴양을 통한 대중 향유 기회 제공
VI	자원관리보호지역 (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생물 다양성과 기타 자연적 가치를 장기간 보호하고 유지)· 지속가능한 생산 목적을 위한 적합한 관리 실행 촉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특정 자연/문화적 경관보호 목표는 카테고리Ⅱ~Ⅵ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의 지정 특성 고려, 특정 자연/문화적 경관 보호 목표 참고, 제1차 관리 목적의 적용 범위(75%) 고려 등을 통해 유연하게 카테고리 분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호지역의 규모

IUCN의 카테고리 분류에 있어,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없으며, 카테고리Ⅱ에 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이용이나 점유에 의해 물질적 변형이 되지 않은 완전한 생태계를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충분히 넓은 지역”이어야 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03년 UN List에 등재된 보호지역 중 국립공원은 1,000ha(10km^2) 이상 섬의 경우 100ha(1km^2) 이상인 것으로 개략적 규모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경우 면적이 가장 작은 월출산이 56km^2 , 계룡산이 64.7km^2 로 규모가 카테고리 구분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지만, 개별 보호지역 별로 지정 목적을 성취하기에 충분한 규모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3) 용도지구(Zoning)

IUCN은 카테고리 적용 지침에서 보호지역 중 적어도 3/4(75%) 이상이 주요 관리 목적(1차 관리 목적)에 맞게 관리되어야 하며, 잔여 지역도 주요 목적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경우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한 자연보존지구가 평균 21.3%, 자연보존지구의 완충 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자연환경지구가 77.7%로서 그 면적의 합이 99%에 이르기 때문에 IUCN의 이러한 용도지구에 대한 기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77.7%를 차지하고 있는 자연환경지구에 대한 관리목표와 관리 노력이 전체 국립공원의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IUCN 카테고리의 구분과 더불어 현행 용도지구의 목적 부합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호지역 경계 조정, 용도지구 구역 조정, 효과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지역주민 점유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카테고리Ⅱ(국립공원)의 경우, 인간의 점유 또는 개발로 인해 현저하게 변형되지 않은 1개 이상의 생태계를 포함한 충분히 큰 규모를 선정 지침에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민에 의한 점유를 부정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에 있어 원주민의 생존을 위한 자원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항목을 두고 있는 등 인간의 점유를 전적으로 부정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지역주민이 일부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경우도 이 항목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탐방객 이용에 관한 항목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항목은 그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개별 지역의 관리 현황과 지정 목적에 맞게 구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유권

보호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공공 소유일 경우, 관리 강화가 용이할 수 있겠지만, 소유권과 관계없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적합한 의사 소통 체계를 통해서 관리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카테고리 구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제도나 협약과 같은 효과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국립공원의 경우도 이 분야에 대한 법·제 정비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6) 복합적 분류

카테고리가 다른 보호지역이 종종 다른 한쪽에 포함되거나 연접하여 지정되어 있기도 하며, 1994년 IUCN의 지침에 따르면 복합적 분류는 하나의 관리지역의 부분이 다른 관리 목적을 위해 법에 의해 분류가 되어 있는 곳에서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하나의 보호지역에 복합적 분류를 적용하는 것인지 각기 다른 다양한 보호지역에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보호지역 내에 용도지구를 구분하는 것과 복합적 분류(multiple classification)가 혼돈될 수 있다. IUCN의 지침에 따르면, 흔히 용도지구는 다양한 목적을 위한 관리 지구로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용도지구 구분이 적어도 75%가 주요 목적에 부합하는 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용도지구가 법적 승인을 거쳐 결정되는 곳도 있는 등 국가별로 용도지구와 복합적 분류가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는데 그 어려움

이 존재한다. 정리해 보면, 용도지구는 일반적으로 관리자나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 의해 지정되거나 법적 승인절차를 통해 지정된 지역에 복합적 분류를 시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경우도 공원계획에 의해 용도지구가 설정되어 있고 그 면적이 아주 광대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지구에 따라 복합적 분류를 시도하기보다는 타 법에 의해 다른 관리목적으로 국립공원 내에 중복 지정되어 있는 곳 등에 복합적 분류를 시

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립공원내 특별히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경우는 공원계획이나 공원관리계획으로 그 지역을 지정하고(특별보호구 or 핵심보전지)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계획 수립과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복합적 분류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 분류의 시도가 국가적 보호지역 시스템 정립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개별 보호지역의 가치와 지정 목적에 적합한 관리 활동 수행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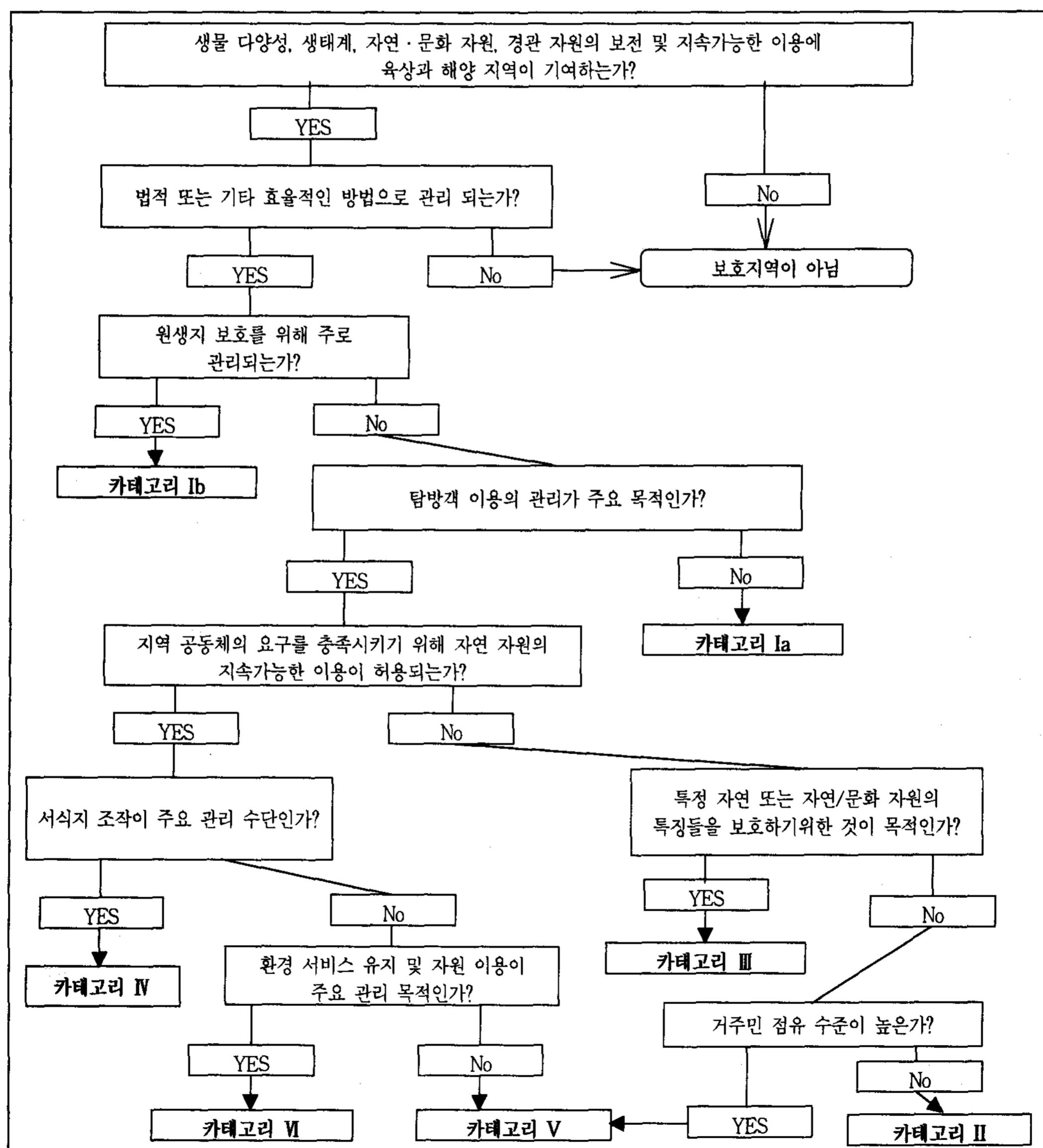


그림 1. 국내 보호지역의 카테고리 구분을 위한 분류기

2.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 채택 방안

개별 보호지역에 맞는 IUCN 카테고리를 채택하기 위한 개략적인 자침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을 중심으로 그 분류키를 정리해 보면 그림 1과 같으며, 이는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 개략적인 카테고리 선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에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국내 보호지역 현황고찰, IUCN 카테고리 시스템 특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IUCN 카테고리 시스템 채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보호지역의 정의에 있어 한국의 보호지역 지정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경관 보전”의 개념을 포함하여, “생물 다양성, 생태계, 자연·문화자원, 경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법적 또는 기타 효율적인 수단으로 지정·관리되는 지역”으로 재정의하였으며, 우리나라 보호지역 현황은 대략 14개 유형으로 1,119개소, 약 15,621km²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 시스템 채택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로 보호지역 관리목적 고려, 용도지역 면적 및 용도지구별 행위규제 내용 고려, IUCN 카테고리별 이용유형의 상대적 비교(탐방, 자원, 거주), 복합적 분류의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IUCN 카테고리 적용을 위한 적용 분류키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 카테고리의 도입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법·제도적 체계 마련이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제도에 대한 실질적 개정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대안 제시 미흡하였으며, 향후 IUCN 카테고리 채택을 통한 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카테고리별 차별화된 관리를 위해 각 카테고리의 보전 목적에 적합한 관리 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 1.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2000년 도에 처음으로 시험적 ESI를 발표한 이래 2001년, 2002년, 2005년 국가별 환경지속성을 비교·평가한 ESI 결과를 발표, 5개 분야 21개 지표 76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아닌 국제기관의 비교자료를 이용(우리나라의 환경지속성지수 순위 2001년: 95위/122개국, 2002년: 135위/142개국, 2005년: 122위/146개국).

인용문헌

1. 우형택(2002) 국제기준에 근거한 남북한 자연보호지역의 실상 비교. *한국환경과학회지* 11(1): 1-14.
2. Bishop, K., N. Dudley, A. Phillips and S. Stolton(2004) Speaking a Common Language: Uses and Performance of the IUCN System of Management Categories for Protected Areas. Cardiff, UK: Cardiff University.
3. Chape, S., J. Harrison, M. Spalding and I. Lysenko(2005) Measuring the extent and effectiveness of protected areas as an indicator for meeting global biodiversity targets. Phil. Trans. R. Soc. B. V. 360: 443-455.
4. IUCN(1994) Guidelines for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NPPA with the assistance of WCMC, IUCN, Gland, Switzerland and Cambridge, UK.